

보험사기의 현황 및 효과적 대처방안

성 수 훈*

목 차

- | | |
|-------------------------|--------------------------------------|
| I. 서 론 | 1. 금융감독원 · 보험개발원 · 보험협회 등의 보험범죄 방지체제 |
| II. 보험사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
| 1. 보험사기와 보험범죄의 개념 | 3. 보험업계의 보험범죄 조사기관 |
| 2. 보험사기의 특징 | 4. 현행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문제점 |
| 3. 보험사기의 유형 | V. 보험사기의 효율적 대처방안 |
| III.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실태와 문제점 | 1. 보험사기의 정책적 대처방안 |
| 1.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적발현황 | 2. 보험사기의 법적 대처방안 |
| 2.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 VI. 결 론 |
| IV. 현행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방지대책 | |

I. 서 론

인간은 예기치 못한 또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책임의 발생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도 하고 사회보험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이 스스로 대비하거나 국가가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단체의 힘인 보험제도를 마련하였다.¹⁾ 즉, 인간은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를 보험제도를 통해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²⁾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지도교수 손동권

1) 보험제도는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써,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찾아낸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7판(박영사, 2005), 481쪽.

보험제도는 본질적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지만 동시에 우연성·사행성(射倖性)에 기인하기 때문에 불법적, 불공정한 행위 등의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으며,³⁾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경제적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생계형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범죄는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 언론을 통해 크게 주목받았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1998년 덤프트럭 화재부터 2005년 부인과 장모를 화재로 숨지게 한 사건까지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고⁴⁾, 2005년 2월에는 생존하고 있는 남편이 숨졌다고 신고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⁵⁾.

위 사례들과 같이 보험범죄는 보험사고에 있어서 우연성의 요건에 어떤 인위성이 가해지고 그 결과 다른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보험의 단체성 및 윤리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의의 사람들이 위험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⁶⁾

이에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범죄의 예방, 적발, 수사 및 처벌 등 보험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고, 보험업계도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험범죄의

2) 보험제도는 경제적 수요를 가장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써 한국인 10명 중 9명은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1인당 연평균 382만원의 보험금을 지출하고 있다. : 문화일보, “소리 없는 대재앙 보험사기 급증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5030901011624303002>>, 검색일: 2010.6.21

3)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4쪽.

4) MTO뉴스, “강호순 살인, 보험범죄 수사로 막을 수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60711171973422&outlink=1>>, 검색일: 2010.6.21

5) 한국일보, “‘남편사망’ 7억 타낸 보험금 사기 부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11/h2007110718512522000.htm>>, 검색일: 2010.6.21.

6) 탁희성, 앞의 책, 24쪽.

가능성을 분석 하는 등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의 미비 및 각 종 취약한 기반 등으로 인하여 보험범죄의 의심과 혐의가 있어도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험을 악용하는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환기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처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진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현행 보험사기 방지대책 및 보험사기 처벌조항의 도입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보험사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보험사기와 보험범죄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범죄를 보험사기라고 불러 지는데, 우선 보험사기⁷⁾는 “보험사고를 불법한 방법으로 야기하거나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7) 미국에서는 보험사기를 경성보험사기(hard insurance fraud)와 연성보험사기(soft insurance fraud)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재해, 도난, 상해, 방화 등의 손실을 고의적으로 각색 또는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에, 기회성 사기(opportunity fraud)라고도 하는 후자는 처음부터 의도하였던 바는 아니나 보험사고시에 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가 합법적인 보험금의 지급을 과장하거나 확대하여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운호/ 최응렬/ 이창한/ 김순석/ 김대권/ 김연수/ 김도우, “보험범죄의 효과적인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경찰·범죄연구소, 2009), 15쪽.

고의적 행위를 하는 범죄⁸⁾ 또는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직접 기망하는 행위로, 형법상의 사기죄(제347조)의 한 유형⁹⁾으로 정의된다. 또한, IASIU에 의하면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해진 주요사실에 대한 계획적인 허위진술”로 정의된다.¹⁰⁾ 한편, 보험사기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보험범죄는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보호를 거저 얻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하는 행위”¹¹⁾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의 형식으로 불법한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¹²⁾라고 정의된다.

이에 반해 보험범죄자나 사기 행위자가 취하고자 하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의해 지불될 보험금에 있다는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범죄 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라고 보아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³⁾ 그러나 보험사기와 보험범죄의 개념은 그 범행대상과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여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8) 이병희, “보험사기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형사법연구 제11호(한국형사법학회, 1999), 211쪽~212쪽.

9) 안경옥, “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64쪽.

10) 탁희성,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77.

11) Farny Dieter, Das Versicherungsverbrechen, Erscheinungsformen, Motive, Haftung und Möglichkeiten der Versicherungstechnische Bekämpfung, 1959, S. 16.; 탁희성, 앞의 논문, 277쪽에서 재인용.

12)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손해보험, 1997), 108쪽.

13) 탁희성, 앞의 책, 33쪽.

2. 보험사기의 특징

2.1 고도로 지능적이다.

보험을 악용·남용, 역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내용이나 보험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률규정들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기는 단순범죄와 달리 고도의 지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범죄가 인간의 범죄성향과 이를 자극하는 환경,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의식 등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유발되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반드시 지능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¹⁴⁾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보험사기자들의 일반적인 범행수법을 보면 이들이 매우 지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공범에 의한 범죄가 많다.

보험사고를 위장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더욱이 보험상품의 특성상 상품정보와 보상절차를 잘 알고 있는 모집종사자, 손해사정 담당자, 보상담당요원 등 보험회사 내부 종사자들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자신의 가족이나 근친을 피해자로 하거나 참여시켜 재해나 상해사고를 유발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려 사고로 위장하고 청부 살인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2.3 고액보험금이 범행대상이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입자의 경제력에 비하여 엄청나게 고액이거나, 범

14) 탁희성, 앞의 책, 37쪽.

죄자가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범행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을 경제적으로 비교·평가하여 보험금액이 월등하게 많은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적으면 범행가치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특약이 있는 보험이나 고액의 생명보험 등이 그 범행대상보험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2.4 다른 범죄와 동시에 그리고 다양하게 발생한다.

보험사기는 형법상의 사기죄 요건만 충족되면 성립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는 살인, 방화, 폭행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발생되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는 담보별로 인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파생된 상품의 종류만 약 350여 종이기 때문에 범죄의 수법도 350여 가지 이상으로 가능할 것이다.¹⁵⁾

3. 보험사기의 유형¹⁶⁾

3.1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유형

이 유형은 손해보험분야에서는 물론 생명보험분야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의 보험사기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금액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책정하거나, 다수보험의 형태로 가입하거나, 고의의무위반 등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5)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질서교란행위 유형(금융감독원, 2004), 108쪽.

16) 보험사기의 유형은 범행대상이 된 보험의 종류에 따른 유형과 범죄자의 행위태양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자의 행위태양에 따른 유형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유형

보험사기중 가장 악의적인 유형으로서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것(고의 보험사고)으로서, 자동차보험에서의 고의적 자동차사고 유발, 화재보험에서의 방화행위, 생명보험에서의 살인 및 자살행위, 상해보험에서의 고의적 자상행위 등이 이러한 범죄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자들은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범행방법도 잔인하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범행을 교사하여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3.3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를 과장한 유형

이 유형은 발생한 보험사고의 피해를 과장하여 가능한 많은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손해액을 허위·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보험사기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액을 보상하는 실손보험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며, 발생한 손해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분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보험사기자들은 가능하면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큰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한다.

이러한 유형의 보험사기는 특히 상해보험분야와 자동차보험분야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¹⁷⁾ 이러한 행동을 동조, 모방하려는

17) 병·의원 진료비 허위 및 과다청구,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계속적인 통증 등을 호소하여 입원기간을 늘리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에서의 수리비 허위·과다청구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도난보험에서 도난 당한 물품의 양이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업(특히, 기술직 종사자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생명보험에서 자연사를 재해사로 위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행태가 나타남으로써 보험범죄를 확산, 촉진시키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⁸⁾

3.4 보험사고를 위장 및 날조하는 유형

이 유형은 모든 보험분야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통적 보험사기이며,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다.¹⁹⁾ 이러한 유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위장 및 날조하는 유형으로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실제로 사망하지 않은 피보험자를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또는 상해급부금을 사취하기 위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해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위장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의 자동차를 매매한 후에 보험회사에 도난신고를 하거나, 진열장에서 미리 상품을 치운 뒤 도난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18) 탁희성, 앞의 책, 46쪽.

19) 2009년도 상반기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허위사고가 431억 원(29.5%)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고의사고와 바뀔치기가 각각 348억 원(23.9%), 236억 원을 차지하였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7쪽 이하 참조.

Ⅲ.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적발현황²⁰⁾

1.1 보험사기의 일반적인 추세 및 발생현황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60년대의 산업화와 더불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70년대 후반과 1980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하여 50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23개, 손해보험회사 27개)가 국내에서 영업 중이다.²¹⁾ 또,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규모는 2007년 기준 보험료 규모는 전년대비 11.1% 성장하여 1,170억 달러(생명보험 813억 달러, 손해보험 357억 달러)로 2006년과 같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고, 보험밀도는 2,384달러로 세계 21위, 보험침투도는 11.8%로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다.²²⁾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한 보험시장의 한편에서는 보험사기가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의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표 Ⅲ-1>과 같다.

20)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정례브리핑자료, 2009), 1쪽 이하 참조.

21) 이윤호 외, 앞의 논문, 56쪽.

22) 국민 1인당 보험료 규모, **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수: 금융감독원, 최근 세계보험시장 동향 및 시사점(보도홍보자료, 2008), 1쪽~2쪽.

〈표 III-1〉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 백만 원, 명, %)

구 분		'06.상반기	'07.상반기	'08.상반기(a)	'09.상반기(b)	증감율(b/a)
적발금액	생 보	18,457	19,236	18,430	23,581	28.0
	손 보	63,139	81,552	90,844	122,441	34.8
	계	81,596	100,788	109,274	146,022	33.6
적발인원	생 보	1,097	1,034	767	1,227	60.0
	손 보	10,005	14,016	15,065	21,574	43.2
	계	11,102	15,050	15,832	22,801	44.0

※ 출처 : 금융감독원,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정례브리핑자료, 2009)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1,460억 원 22,8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기준 33.6%(367억 원), 인원기준 44.0%(6,969명) 증가하였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의 증가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무직·일용직 등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 손해보험사기 적발실적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시 시국사건의 증가로 보험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 점과 일부 보험사의 파업 및 특정사건의 장기조사 등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²³⁾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적발 방법별로 구분하면, 보험조사 전담조직이 적발한 조사적발²⁴⁾은 3,942명(330억 원)이며,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된 현장적발²⁵⁾은 18,859명(1,130억 원)이다.

23) 금융감독원, 앞의 보고서, 1쪽.

24) 조사적발이란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이 입건한 경우를 말한다.

25) 현장적발이란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조사 과정에서 혐의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자진 반납한 경우를 말한다.

1.2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 67.6%(987억 원),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15.2%(223억 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10.3%(150억 원) 순이며, 화재보험 부문의 비중은 4.5%로 낮지만 전년동기 대비 155.6%로 전체 증가율(33.6%)을 크게 상회하였다.

2009년도 상반기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금액현황을 보면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29.5%(431억 원)으로 금액이 가장 높았고,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사고는 23.9%(348억 원), 바꿔치기는 16.2%(236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꿔치기 등 사고 후 우발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은 38.5%로 전년동기 47.9% 보다 9.4% 감소한 반면 허위사고·고의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사기유형의 비중은 54.3%로 전년동기 44.6% 보다 9.7% 증가하였다.

<표 III-2>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 분	'06년 상반기		'07년 상반기		'08년 상반기		'09년 상반기		증감율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적발금액	구성비	
고의사고	16,701	20.5	16,808	16.7	21,402	19.6	34,846	23.9	62.8
허위사고	15,563	19.1	25,967	25.8	26,433	24.2	43,121	29.5	63.1
피해과장	15,604	19.1	14,582	14.5	17,818	16.3	15,959	10.9	-10.4
사후가입	9,068	11.1	16,693	16.6	13,081	12.0	16,704	11.4	27.7
바꿔치기	18,668	22.8	18,565	18.4	21,424	19.6	23,638	16.2	10.3
차량도난	2,192	2.7	1,721	1.7	928	0.8	1,204	0.9	29.7
기 타	3,800	4.7	6,452	6.3	8,188	7.5	10,551	7.2	28.9
합 계	81,596	100	100,788	100	109,274	100	146,022	100	33.6

※ 출처 : 금융감독원,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정례브리핑자료, 2009)

1.3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적발인원 기준으로는 자동차보험이 87.1%(19,867명), 장기보험이 6.7%(1,533명), 보장성보험이 5.0%(1,145명)을 차지하였다. 한편, 자동차 이용이 생활되어짐에 따라 자동차보험사기²⁶⁾가 가능해져 그 적발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²⁷⁾ 보장성보험 부문의 적발인원은 1,145명으로 전년동기 659명 보다 73.7%(486명) 증가하여²⁸⁾ 전체 증가율 44.0%를 크게 상회하였다.

2009년도 상반기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인원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3>과 같다.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29.0%(6,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사고 후 우발적인 사기유형인 사고운전자 바뀌치기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사고, 사후가입이 각각 22.7%(5,182명), 18.4%(4,193명), 13.2%(3,011명) 순으로 나타났다.

26) 예컨대 가·피해자 공모 교통사고(고의사고), 피해자 끼워넣기(허위사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운전자 바뀌치기(바뀌치기), 사고발생후 보험가입(사후가입), 자신 소유의 차량을 매매한 후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신고(차량도난) 등

27) 2007년에는 79.9%, 2008년에는 85.0% 그리고 2009년에는 87.1%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8) 특히, 자기신체 손해가 6명에서 88명으로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사고내용 조작이 13명에서 87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III-3>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단위 : 명, %)

구 분	'06년 상반기		'07년 상반기		'08년 상반기		'09년 상반기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증감율
고의사고	1,697	15.3	2,378	15.8	2,159	13.6	4,193	18.4	94.2
허위사고	2,192	19.7	3,827	25.4	4,259	26.9	6,613	29.0	55.3
피해과장	1,316	11.9	1,090	7.2	1,586	10.0	2,027	8.9	27.8
사후가입	1,166	10.5	2,333	15.5	1,579	10.0	3,011	13.2	90.7
바꿔치기	4,175	37.6	4,367	29.0	4,723	29.9	5,182	22.7	9.4
차량도난	42	0.4	27	0.2	22	0.1	66	0.3	200.0
기 타	514	4.6	1,028	6.9	1,492	9.4	1,709	7.5	14.5
합 계	11,102	100	15,050	100	15,832	100	22,801	100	44.0

※ 출처 : 금융감독원,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정례브리핑자료, 2009)

1.4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연령

보험사기로 인하여 적발된 혐의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표 III-4>와 같다. 40대가 27.8%(6,334명)로 가장 높고, 30대가 25.8%(5,868명), 20대가 19.9%(4,542명), 50대 18.5%(4,2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및 20대의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7.1%, 64.3%로 다른 연령대(30~60대)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특히, 10대의 보험사기는 과거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단순 가담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학교 선후배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실행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²⁹⁾ 한편, 성별은 남성이 79.4%(18,102명) 여성이 20.6%(4,699명)을 차지하였다.

29) 2009년 6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역주행 차량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고등학생이 대거 낀 보험사기 일당 108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표 III-4〉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연령

(단위 : 명, %)

구 분	'06년 상반기		'07년 상반기		'08년 상반기		'09년 상반기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관련자	구성비
10대	98	0.9	259	1.7	189	1.2	486	2.1
20대	2,124	19.1	2,952	19.6	2,765	17.5	4,542	19.9
30대	3,118	28.1	4,467	29.7	4,396	27.8	5,868	25.8
40대	3,337	30.1	4,305	28.6	4,761	30.1	6,334	27.8
50대	1,845	16.6	2,286	15.2	2,797	17.7	4,221	18.5
60대	485	4.3	653	4.3	788	4.9	1,120	4.9
70대	75	0.7	81	0.5	124	0.7	210	0.9
기타	20	0.2	47	0.4	12	0.1	20	0.1
합계	11,102	100	15,050	100	15,832	100	22,801	100

※ 10대 : 06년(87~96년생), 07년(88~97년생), 08년(89~98년생), 09년(90~99년생)

※ 출처 : 금융감독원,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정례브리핑자료, 2009)

2.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발생원인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각종 투기심리조장과 향락산업의 대중화 그리고 일반인의 도덕적 가치관의 부패가 초래하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키고, 부의 분배는 쟁취하는 것이며 빠를수록 좋다는 시각의 선호가 나타나며, 부의 재분배의 불공평에 대한 저항의식과 금전숭배사상의 확산에 따른 인명경시풍조현상 등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부도덕행위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보험이 갖는 사행성을 악용함으로써 보험을 야심달성의 수단으로 이용 하려는 도덕적 위험이 증대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³⁰⁾

보험회사의 보험사고의 암묵적인 용인태도 또한, 보험사기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간혹 사기의 의심이 있는 계약자를 형사사

30) 오근황, “우리나라 생명보험범죄의 형태와 그 방지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성균관대학교, 1985), 43면.

건으로 고발하는 것 보다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급부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주장하도록 위임한다. 왜냐하면 보험금 불지급을 선언한 보험회사에 대한 매스컴 보도가 가입자 일반에 대한 편향으로 기울기 쉽고, 이러한 결과 보험회사는 그릇 인식된 사회 여론을 과민하게 의식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가입자에게는 그들이 자사에 가입한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지급결정에 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게다가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불필요한 조사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³¹⁾ 이와 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극적인 태도와 한계는 사건 자체가 은폐됨으로써 보험사기의 전체적인 규모나 범위가 전혀 파악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³²⁾ 보험사기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³³⁾

IV. 현행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방지대책

1.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협회 등의 보험범죄 방지체제

금융감독원은 보험검사국 내에 보험사기 담당부서인 보험조사실을 2001년 12월부터 설치하여 보험사기 조사기법 개발·연구·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등의 인지보고와 보험범죄 신고센터

31) 경찰의 경우 조서공개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보험회사는 경찰의 업무를 위한 업무 협조요청에 당연히 협조하여야만 한다.

32) 경제범죄의 특징은 범죄통계에 있어서 암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범죄는 전체보험사고 발생건수가 약 10%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 김두철, 보험과 위험관리(문영사, 1999), 48쪽.

33) 탁희성, 앞의 논문, 66쪽.

등을 통해 취득한 보험사기 혐의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07년 4월에는 보험조사실 내에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설치하여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기능과 공보험 및 유사보험 등과의 공동조사 기능을 강화하였다.³⁴⁾ 현재 금융감독원은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조사실 업무를 조사기획팀, 생명보험조사팀, 손해보험조사팀, 조사분석팀으로 나누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³⁵⁾

보험개발원에서도 통계본부내에 조사통계팀을 설치하여 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련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보험사기방지팀과 보험범죄대책반을 설치하여 제도 도입 및 개선, 보험사기 조사반 운영, 보험사기 유익자 계약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표 V-1〉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구성 및 담당업무

부 서	담당업무
조사 기획팀	- 조사기획 총괄 - 연간업무계획 수립, 보험범죄방지 홍보업무, Contact Helper, 부서업무 안내 - 부서총무
생명보험 조사팀	- 생명보험조사 총괄 - 생명보험사기 조사, 조사기법 개발 및 연구, 보험사기 제도개선
손해보험 조사팀	- 손해보험조사 총괄 - 손해보험사기 조사, 소방방재청 및 사고조사기관 협력, 수사기관 협조의뢰 관리
조사 분석팀	- 조사분석 총괄 - 손해보험 수사기관 공조조사 및 유관기관의 협력, 특정분야 조사 - 보험조사 통계관리시스템 관리 및 관련 통계분석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 2007.

34)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2007), 19쪽.

35)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위의 보고서, 20쪽~21쪽 참조.

2.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경찰에서는 보험범죄를 경제사범으로 분류하여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에서는 국민 생활침해사범에 대해 해마다 시기별로 적절한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생활,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³⁶⁾ 특히,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가 1999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래 경찰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관계 공사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보험사범 검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⁷⁾

한편, 전국 수사경찰관의 교육을 맡고 있는 경찰 수사연구원에서는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일선 수사경찰관의 보험범죄 수사 기법향상을 위해 매 교육기수마다 보험범죄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보험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일선 수사관들이 보험범죄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조사관의 합동교육은 양자간의 상호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효과를 가져옴으로서 보험범죄 조사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³⁸⁾

36) 김남현/ 박현호, 보험범죄 수사체계에 관한 연구(손해보험협회, 2007), 84쪽.

37) 2004년 한 해에만 전국 병·의원 약 200개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약 250여명의 병·의원 관계자가 사법처리되었고, 2005년 상반기에는 수리비를 허위 청구한 정비, 부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가 이루어져 전국 20여 수사기관에서 약 400여개소가 넘는 정비업체, 부품업체, 렌트카업체 등에 대한 총체적 수사를 진행하여 약 430여명을 사법처리하고 30억 원 상당의 편취액을 적발하였다.; 김남현/ 박현호, 위의 책, 86쪽.

38) 보험범죄 관련 강의는 짧은 강의시간이지만 교육생들에게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수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수사기법 공유로 수사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보험범죄 아카데미 출신 경찰수사관들이 교육 수료 후 대형보험범죄를 적발하는 경우도 많다.; 김남현/ 박현호, 앞의 책, 89쪽.

3. 보험업계의 보험범죄 조사기관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도덕적 위험요소의 파악 및 이의 방지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고 생명보험협회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명보험범죄 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³⁹⁾ 그 기능으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도덕적 위험요소의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도덕적 위험 방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회사로부터 신고 된 보험범죄행위 의심자 조사에 관한 사항, 사법기관(검찰, 경찰 등)의 보험범죄조사에 대한 협조 사항,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도덕적 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1995년 1월부터 운영하여온 ‘자동차보험 도덕적 위험방지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2000년 7월 손해보험범죄 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⁴⁰⁾ 그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범죄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둘째,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범죄 위험요소의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셋째, 신고 및 인지된 보험범죄 의심자 조사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 넷째, 금융감독원 및 사법기관에서 의뢰한 보험범죄자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째, 의료비 및 수리비 보상관리 전담반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타 보험범죄 예방 대외 홍보 및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⁴¹⁾

그리고 삼성화재에서는 보험기획팀 소속인원 6명으로 구성된 조사지

39) 2000년 1월 생명보험협회에 설치한 비상설기구로서 생명보험협회 및 동 협회의 비상임 이사가 소속한 회원사의 사고조사 담당인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0) 손해보험범죄 방지대책위원회는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범죄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의 단체성을 확보하며, 손해보험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41) 이운호 외, 앞의 논문, 73쪽~74쪽.

원팀을 설치하였다.⁴²⁾ 이후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SIU를 만들어 운영한 후, 현재는 17개 사가 보험사기 담당조직을 운영하고 있다.⁴³⁾

4. 현행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문제점

현행 보험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단계에서부터 계약이나 손해사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시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심사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사정업무만을 강화하는 방행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손해사정인들도 전문적 지식이나 손해사정기술이 부족하여 단지 보험사기를 발견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손해사정업무중에 보험사기 혐의자를 발견하여도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가 부족하여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⁴⁴⁾

둘째,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각자 자기 분야의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활동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을 중복적으로 지출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셋째,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사전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에 범죄에의 유인책을

42)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SIU(Special Investigative Unit)라고 할 수 있다

43) 우리나라 SIU의 경우에는 조사 및 직원 교육 이외에도 조직폭력배 등 제3자나 이해집단의 위협 및 협박에 대처하는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사기방지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그 지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윤호 외, 앞의 논문, 74쪽.

44) 조해균/ 양행승, “범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2권 제2호(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176쪽.

차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사후적 대처방안에만 주력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V. 보험사기의 효율적 대처방안

1. 보험사기의 정책적 대처방안

1.1 기존의 보험경영관행의 탈피

보험업계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높은 해약율, 보험모집인의 대량유입과 대량이탈, 부실계약의 체결, 보험계약 내용의 미고지 및 대리계약의 묵시적 허용 등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 즉, 보험회사간의 과다한 경쟁에 의해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인식이 희생되는 양적 성장만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특히, 보험회사간의 과다 경쟁의 파생으로 도덕적 위험의 배제노력에는 소홀하고 신규계약수집만을 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업은 일종의 위험부담업으로 계약에 맞게 위험을 다각도로 손익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오히려 보험사기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수되어 오고 있는 기존의 실적위주의 보험경영방식을 전환하여 양보다는 질적인 보험경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1.2 보험사기 예방 협의체의 구성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사법기관 등 행정부와 보험업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겠다. 현재 행정부

와 보험업계는 ‘보험조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보험조사협의회’ 유일한 민관협의체로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운영목적 및 조직구성이 달라 체계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권 침해우려의 제기와 보험범죄 전담 기구 미설치 그리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미 참여 등으로 그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다.⁴⁵⁾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계기관간의 공조강화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에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보험범죄를 포함한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정부와 민간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체결 등을 통한 발전이 있어야 한다.

1.3 보험범죄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제보와 조사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비효율적인 적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험회사로부터 5개 보험 분야의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혐의자 선정, 분석, 조회, 관리 및 통계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는 있지만, 역으로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험회사가 인지시스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45) 신정훈,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처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 공안행정학회 보 제22호(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143쪽~144쪽.

이처럼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회사의 정보자료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각 개별회사는 정보전산 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막대한 재정적 지출도 감당해야 한다.⁴⁶⁾ 아울러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와 달리 보험범죄에 집중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지만, 경찰관서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화시킨 ‘범죄정보 관리시스템⁴⁷⁾’이 있다.

각 기관별로 업체별로 시스템 운영 목적에 따라 정보를 수집·분석에는 차이가 있지만 영국과 같이⁴⁸⁾ 금융감독위원회, 경찰 그리고 보험업계가 보험사기와 관련된 일정수준에서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필요성이 있다.

1.4 보험사기예방을 위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IMF 사태 이후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자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한 범죄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의 수단과 방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악질적으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보험사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될 것이다. 즉 이러한 교육 및

46) 실제로 생명보험협회는 역선택(逆選擇) 차단 및 보험범죄 등으로 인한 부당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심사 토대 마련 차원에서 ‘보험계약정보 통합시스템(KLICS : 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m)’을 구축하였다.

47)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은 사건수가·범죄통계·범죄분석·수사지식정보·형사사법정보망이 연계·통합된 것으로, 보험범죄들도 이 시스템의 데이터에 저장된다.

48) 영국의 경우 1999년 영국보험협회(ABI)와 경찰서장협회(ACPO)는 그 동안 보험업계와 경찰 간 정보를 교환해 오던 것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침서를 제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 결과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각 지역의 정보담당자에게 보험사고와 관련된 경찰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윤호 외, 앞의 논문, 102쪽.

홍보활동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려서 보험사기경향을 자극하는 제반 심리적·사회적 요인을 어느 정도 경감 또는 제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이외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정도가 낮다. 또한 현실적으로 TV, 인터넷, 신문, 라디오 등과 같은 대중매체들은 보험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동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른 범죄관련 프로그램들의 역기능으로 지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실적, 선정적 보도는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하여 모방범죄를 부추키거나 보험가입자이 도덕적 해이현상을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협회와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기관이 담당하여 보험에 가입한 범죄를 야기하면 반드시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험가입자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보험사기의 법제적 대처방안

2.1 보험사기 처벌조항 도입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범도 지능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들처럼 보험사기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

보험사기를 비롯한 보험범죄는 단순히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고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사회의 건전한 경제질서도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는 ‘보험업법’ 내에 보험사기를 특정하여 규

정한 항목이 없고, 다만 보험사기를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행위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사기죄의 가중처벌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보험사기와 관련된 살인, 방화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살인죄(제250조), 방화죄(제164조)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형벌법규가 보험사기에 대한 흠결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지만⁴⁹⁾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정의나 처벌조항을 두어 보험사기의 위법성을 보험사기에 직·간접으로 가담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범죄의 위화감(違和感)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2.2 보험사기 처벌조항의 입법적 도입

민주당 신학용의원은 제18대 국회에서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입법의 미비로 지적되고 있으며, 나아가 어떤 법에도 보험사기의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일반예방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⁵⁰⁾고 하여 보험사기의 정의와 유형을 규정한 조항(안 제2조 제18호)과 보험사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안 제197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는 규정(안 제162조 제1항)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공단체 등에 관한

49) 최석운, “보험과 형법”, 비교형사법 연구 제8권 2호, (비교형사법학회, 2006), 778쪽

5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신학용의원등 17인) 의안원문, (국회사무처, 2009. 2.), 1쪽~2쪽.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안 제163조의2)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개정안(안 제347조의3)도 함께 발의하였다.⁵¹⁾ 더불어 피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보험사기를 가중처벌하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도 개정안(안 제3조 1항)을 발의하였다.⁵²⁾

2.3 개정법안의 보험사기 정의

제18대 국회에서는 보험사기의 정의에 관한 발의안을 2009년 11월에 상정하였다. 보험사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공성진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신학용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두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행위태양에 대해 법적 근거를 최초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하지만 <표 V-2>에서 볼 수 있듯이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표 V-2>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기)

공성진의원 개정안	신학용의원 개정안
보험업법 제2조 18. “보험사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손괴·방화 또는 분실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 또는 상해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2조 18. “보험사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이 행위를 공모하는 행위

5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보험업법일부개정안(공성진의원등 14인) 의안원문, (국회사무처, 2009. 3.), 1쪽~2쪽.

5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등 12인) 의안원문, (국회사무처, 2009. 3.), 1쪽~2쪽.

공성진의원의 개정안은 “재산의 손괴, 방화, 분실”과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 구체적으로 행위태양을 나열한 반면에, 신학용의원이 개정안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일반화된 행위태양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신학용의원의 개정안은 범죄행위의 공모에 대해서도 보험사기로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4 개정법안의 보험사기의 처벌조항

처벌조항으로는 <표 V-3>과 같이 공성진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보면 형법 제347조의3에 보험사기에 관한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형법을 통해 보험사기를 처벌하고자 하고, 신학용의원은 보험업법 제197조의2에 벌칙조항을 추가하여 처벌하고자 한다.⁵³⁾

〈표 V-3〉 보험업법 개정안(양형기준)

공성진의원 개정안	신학용의원 개정안
형법 제347조의3(보험사기 등) ①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원인, 시기, 내용 등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 2. 보험의 목적물을 손괴·온닉 또는 이전하는 행위 3. 거짓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행위 4. 거짓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제작하는 행위 ③ 제237조의2는 제2항 제3호의 죄에 준용한다.	보험업법 제192조의2(벌칙) 제102조의2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3) 제17대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듯이 보험업법에서 벌칙조항으로 보험사기를 처벌하게 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을 기준으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공성진의원의 개정안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의 하한을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에서의 선고 형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 하는 경우가 전체의 74.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보험사기에 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재의 법원의 태도를 고려해야할 필요는 있다는 견해가 있다.⁵⁴⁾ 그러나 위 법안은 보험사기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보험사기가 인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다른 범죄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왜곡한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1년 이상”이라는 징역형의 하한 설정은 결코 중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기죄의 이득액 정도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보더라도 양형의 적정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공성진의원의 개정안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실질은 그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다. 예비행위는 범죄 실행의 착수 이전단계이므로⁵⁵⁾ 아직 법익침해이 직접적 위험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범죄의사가 확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하여 형법이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보험사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재산범죄인 사기죄의 예비에 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54) 이윤호 외, 앞의 논문, 109쪽.

55) 보험사기죄의 실행 착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희, 앞의 논문, 209쪽~226쪽.

않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보험사기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2항의 예비죄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Ⅵ. 결 론

보험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보험상품이 다양화되며, 저액의 보험료에 의한 고액의 보장보험가입이 용이해짐으로써 오늘날 보험계약자의 역선택(逆選擇), 즉 보험범죄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발생이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보험혜택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사취하는 계획범죄로서 그 사회해악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구조의 불안정, 사업실패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보험계약의 성질이라 할 수 있는 사행계약성과 보험범죄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보험사기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행정부와 보험회사 등이 보험사기 방지에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보험사기관리 실태는 그 역사나 내부 인프라 면에서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에 비해서 투자도 매우 부족하다. 게다가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을 이미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은 보험회사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 수인할 수밖에 없다는 안이한 사고에서 보험사고 내지 보험사기를 방지하는데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보험업체는 이미 발생된 보험사기에 대해 묵인하거나 단순히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험사기의 의심이 있는 보험금 청구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도 합리적인 조사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

하여야 한다. 즉, 보험사기의 근원적인 척결을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 기관의 과학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제도장치가 완비되고 과학적 대처와 국민의식 제고로 보험사기를 척결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범죄의 구성요건과 차별화된 보험금사취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그에 적절한 형사처벌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사기죄에 관한 입법방안으로서는 보험업법에 관련규정을 두는 것 보다는 현실적인 실효성을 갖는 형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년 이상'이라는 징역형의 하한 설정은 타당하지만, 보험사기의 예비행위 처벌은 형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법안 제347조의2 2항의 예비죄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투고일 2010년 6월 30일, 심사일 2010년 7월 7일, 게재확정일 2010년 7월 13일)

주제어 : 보험범죄, 보험사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 보험사기의 대처방안, 보험업법 개정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회사무처, ‘보험업법일부개정안(신학용의원외 17인)’ 의안원문, 국회사무처. 2009.
- _____, ‘보험업법일부개정안(공성진의원외 14인)’ 의안원문, 국회사무처. 2009.
- _____,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등 12인)’의안원문, 국회사무처. 2009.
- 금융감독원,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정례브리핑자료, 2009.
- _____, 민생침해 금융질서교란행위 유형, 2004.
- _____,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 2007.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최근 세계보험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도홍보자료, 2008.
- 김남현/ 박현호, 보험범죄 수사체계에 관한 연구, 손해보험협회, 2007.
- 김두철, 보험과 위험관리, 문영사, 1999.
-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손해보험, 1997.
- 안병재, 보험범죄의 현황과 방지시스템, 대한손해보험협회, 2001.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7판, 박영사, 2005.
-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 논문

- 신정훈,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처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 안경옥, “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오근황, “우리나라 생명보험범죄의 형태와 그 방지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1985.
- 이병희, “보험사기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형사법연구 제11호, 한국형사법학회, 1999.
- 이윤희/ 최응렬/ 이창한/ 김순석/ 김대권/ 김연수/ 김도우, “보험범죄의 효과적인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경찰·범죄연구소, 2009.
- 조해균/ 양행승, “범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 최석윤, “보험과 형법”, 비교형사법 연구 제8권 2호, 비교형사법학회, 2006.
- 탁희성, “보험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황만성/ 신의기/ 탁희성,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 방향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Abstract]

The Present of Insurance Fraud And Plan for Effective Countermeasure

Su-Hun Seong*

Insurance fraud has greatly increased each year because of the generous social atmosphere for speculative contracts taking on the character of insurance contract and insurance crimes along with economic difficulties such as unstable employment structure, business failure and the like since the Korean exchange crisis in 1997.

For the years, national government and insurance companies have made endless efforts to prevent insurance fraud but the realities of control over insurance fraud in Korea can be said to be at an early stage in terms of its history and intern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to prevent insurance fraud is very poorly made compared to its importance. In addition, insurance companies have not made thorough efforts to prevent insurance accidents and fraud out of the easy thought that they cannot but to accept a certain degree of loss to enhance their image because they reflect losses induced by insurance fraud in the premium. Accordingly, the insurance world needs to make diverse and active efforts in order to remove the fundamental cause of insurance fraud. And related agencies should devote themselves to its scientific management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And people should

* Student, A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Guidance Professor, Dong-Kwon Son,

take care not to suffer from insurance fraud.

And in order to prevent insurance frau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quirements for existing basic crimes and the independent requirements for formation of illegal act aiming at differentiated insurance fraud.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ovisions of criminal punishment proper to it. But it is thought that it is valid to enact the criminal law with actual effectiveness rather than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insurance business law as the scheme for legislation of insurance fraud.

Key Word : Insurance Crime, Insurance Fraud, The Present of Insurance Fraud, Revision of Insurance Business Law, Countermeasure of The Intellectual Crime.

